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41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정 의원)

가. 제안사유

- 소형 및 첨단 디지털기기의 발달 및 보급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북도민의 사생활 보호, 시설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안 제8조)
-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최근 첨단 디지털기기가 일반화 및 소형화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관련 범죄 및 검거 사례가 있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의 발생, 검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민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의 사전예방 및 사후 점검 등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이 제정안은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체계는 아래와 같음

구분	제목	구분	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사업 등
제2조	정의	제7조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
제4조	예방계획 수립 · 시행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5조	실태조사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충청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의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등, 공중위생영업소,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기기 등에 관해 충청북도민과 집행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함
 - 특히, ‘이벤트나 장난 등 유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범죄의식 약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불법촬영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 해당 행위의 범죄성 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올바른 표현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함
-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불법촬영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음
-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 관해 규정하여,
 -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특히, 포함사항에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반영, 특별관리구역 지정,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구성·운영,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
-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시행 중인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부서의 중복업무 배제 및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안 제6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반 운영 및 적정 탐지장비 확보지원, 민간 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에 대한 지원 등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동점검반 또는 상시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지원할 수 있고, 자체 점검 시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대여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화장실 등까지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는 불법촬영에 관한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 충청북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충북도 내 시군뿐만 아니라 경찰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 기대됨
- 안 제9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등에 관한 사용교육과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바람직함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내용 및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충청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촬영 예방 현황
3. 불법촬영 점검계획
4. 특별관리구역(역·터미널·변화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및 점검계획
5.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구성·운영 방안
6.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7.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8.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지원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동점검반 또는 상시점검반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대여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 ①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군, 충청북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자(민간시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각 호 중 각 목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 ⑧ (생략)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사용을 도모하여 충청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시행에 따라 각종 지원 사업에 비용의 수반이 일부 예상되지만,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이전에는 비용의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워 제외 사유서를 제출함